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5648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3나564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1가소247190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앤씨 담당변호사 우지훈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영진, 김솔이

변론 종결 2024. 10. 11.

판결 선고 2024. 11.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1가소24719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62,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62,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는 2011. 8.경 D 및 피고를 상대로 할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68521), 위 법원은 2011. 8. 31. "D와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799,367원 및 그중 21,499,989원에 대하여 2011.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9. 23.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을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6. 23. 선행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20타채4984,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피고는 2020. 7.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자신은 D와 원고 사이의 할부금융거래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행 지급명령상 피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바, 선행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80658), 위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2966) 위 판결은 2022. 5. 19.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21. 9. 17.경 선행 지급명령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청구이의의 소가 확정된 후 원고는 2022. 7.경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들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25772), 위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2023. 1. 12.경 1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가 2023. 1. 12. 지급받은 위 1억 원과 법원환급금 합계 177,337원을 합한 100,177,337원을 선행 지급명령상 채권에 대하여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면, 2023. 1. 12.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행 지급명령상 채권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금 15,062,598원이 남는다.

[인정 근거]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금 15,062,598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성명을 기재한 적도 없고, 위 계약서를 본 적도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D의 채무에 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전 남편인 D가 권한 없이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의 위임장조차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바, 원고가 D에게 대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항목을 포함한 각 연대보증인 명의의 서명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고 피고의 인감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육안으로 확인되는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피고 명의의 인영을 비교해 보면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아닌 사람이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의 인감을 날인한 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유지되고, 이 사건 계약서의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 역시 추정되므로,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직접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D는 부부였고, 계약 체결 시점에 근접한 2005. 3. 19. 발급된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피고가 배우자로서 D와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D, 처 피고)이 원고에게 제출된 점, ② 이 사건 계약 체결 전날인 2005. 3. 22. 원고의 직원 E가 여신 심사를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될 피고와 통화하고 여신 승인품의를 하였으며, 2005. 3. 24.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도 제출받은 점을 종합해 보면, D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원고가 피고의 배우자로서 기본대리권이 있는 D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한 부분을 제외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의진

판사김양훈

판사정인재

별지